##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77

발의연월일: 2023. 1. 30.

발 의 자:홍정민·강득구·김민석

김병욱 · 김영주 · 김철민

맹성규 · 민형배 · 이용빈

이용선 · 이용우 · 한병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상호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정부재정을 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

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제13호 및 제63조의2 신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13.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0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2(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특례) 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될 수 있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 업자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등록 절차·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다.

제70조의 제목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을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2.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이
	<u>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u>
	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
	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
	<u>한다.</u>
<u>&lt;신 설&gt;</u>	13. "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이
	란 벤처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
	0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u>말한다.</u>
<u> &lt;신 설&gt;</u>	제63조의2(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에 대한 특례) ① 민간벤처투
	자모태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
	<u>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u>
	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
	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②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 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0조(공공벤처투자모태조합의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 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 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 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 ⑤ (생 략)

지.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 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관 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 에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벤처투 자모태조합의 등록 절차·방법 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다.

결성 등) ① -----

----- 공공벤처투자모 태조합-----

- 1. ~ 7.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